

韓國에 있어서 封建的 土地所有의 性格

—특히 15·16세기를 중심으로—

安 秉 直*

.....<目 次>.....

- I. 小農民經營의 實態
- II. 農民의 身分과 地主·佃戶關係
- III. 土地所有關係에 있어서 封建國家의 位置

종래 한국중세사연구에 있어서 封建的 土地所有의 성격을 해명하려는 작업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봉건사회의 기본특징이 영주 내지 지주의 大土地所有와 직접생산자인 농민의 分散的 經營이라고 한다면 봉건적 토지소유의 성격을 해명하는 작업이야 말로 봉건사회의 기본성격을 해명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봉건적 토지소유에 관한 연구는 중세사연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분야이며, 그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다른 분야에 관한 연구보다도 활발하리라는 것이 기대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한국중세사회의 성격에 대하여 基本的인 점에서나마 共通的 이해에 이르렀다고는 말할 수 없겠다.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공통적 이해를 가질 수 없는 데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종래의 연구에 비추어 볼 때 그 이유는 다음의 두가지 점에 있다고 하겠다. 첫째는 事實認識의 차이를 들 수 있겠다. 같은 사실과 같은 사료를 두고 해석이 서로 다른 것이다. 이 문제는 한국중세사像의 윤곽이 대체로 들어나고 구체적 史實의 실체가 소상하게 밝혀질 때 스스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므로 해결의 전망은 밝다고 하겠다.

둘째 이론의 이해에 있어서 混亂이 있는 것 같다. 종래의 연구업적을 검토해 보면, 봉건적 토지소유의 성격을 해명하는데 있어서 그 연구의 초점이 주로 토지소유에 대한 法律的 關係의 해명에 두어져 있다. 봉건적 토지소유의 성격해명이 國有論=公田論 대 私有論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사실이 바로 이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봉건적 토지소유의 성격이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助教授

국유였든가 사유였든가는 그 자체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은 봉건적 토지소유의 성격의 한 측면에 불과한 것이며 그것만으로는 중세사회의 기본성격을 나타내는 토지소유의 多面的 성격을 해명하기에는 불충분한 것이었다.

오히려 우리는 중세사회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토지소유의 성격을 둘러싼 국유나 사유나 단순한 논쟁보다도 중세사회의 身分的·階級的 구성의 해명 등이 훨씬 도움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토지에 대한 법률적 소유관계는 추상적이며 중세사회의 신분적·계급적 구성 등은 보다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아니라 한 조각의 토지를 놓고 형성되는 인간들의 계관계가 토지소유의 성격을 결정하는 보다 근원적인 요인이 된다는 사실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토지소유에 대한 법률적 규정들이 중세사회의 인간들의 存在形態를 규정하는 강력한 힘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법률적 규정 그 자체는 인간들의 사회적 관계를 전제로 설정된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러면 봉건적 토지소유의 성격 및 중세사회의 성격을 결정하는 인간들의 사회적 계관계는 어디에서 형성되는 것인가. 만약 우리들이 衣·食·住가 인간생활에 있어서 결할 수 없는 기본적 전제라고 할 때, 인간들의 基本的인 사회적 계관계는 生産과정에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생산과정에서 맺어지는 인간들의 사회적 계관계는 대토지소유자인 영주 및 지주와 직접생산자인 농민과의 사회적 관계이다. 중세사회에 있어서 생산의 기본단위는 小農民經營이었다. 이 소농민경영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대토지소유자인 영주 및 지주의 사회적 성격과 농민의 사회적 성격을 밝히는 일이 봉건적 토지소유의 성격을 해명하는 기본적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는 중세사회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토지소유의 성격에 관한 해명보다도 직접생산자인 농민들의 사회경제적 처지에 관한 해명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직접생산자인 농민이 사회발전을 조건짓는 생산의 擔當者이라는 점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대토지소유는 역사발전의 각 단계에서 발견될 수 있는데 대하여, 農奴의 사회경제적 存在形態는 중세사회에 특유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농노의 사회경제적 존재형태야말로 중세를 고대 및 근대와 갈라놓는 기본적인 특징인 것이다.

농노의 사회경제적 존재형태는 중세사에 있어서 普遍的 특징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각국의 중세사의 해명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으나 그것의 분석만을 통해서서는 각국의 중세사의 一般性を 밝히는데 불과할 것이다. 동양중세사 또는 한국중세사의 特殊性을 밝히기 위해서는 농민의 사회경제적 존재형태는 물론, 흔히들 동양중세사회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中央集權的 專制權力을 시야에 넣어야 한다. 다시 말하

면 한국의 봉건적 토지소유의 성격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한국중세의 토지소유에 있어서 중앙집권적 전제권력이 차지하는 위치가 정당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토지소유의 성격을 해명하는 데 있어서 중앙집권적 전제권력을 시야에 넣음으로써만이 한국중세사의 특수성이 올바르게 밝혀질 것으로 생각된다.

I. 小農民經營의 實態

중세사회에 있어서 지배적 생산부문은 농업이었다. 농업과 결합된 副業으로서의 가내수공업과 독립수공업이 다소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농업에 부속된 것이었거나 농업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었다. 다시 말하면 중세사회에 있어서는 농업생산의 성격이 그 사회의 성격을 결정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한국중세사에 있어서 농업생산의 기본단위는 소농민경영이었다고 생각되고 있다. 논자에 따라서는 三國時代에 이미奴婢에 의한 奴隸制의 大經營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도 있으나 아직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것같이 보이며, 비교적 자료가 풍부하다고 생각되는 麗末・鮮初에 있어서는 그러한 증거를 발견하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한국중세사회에 있어서는 농노제에 의한 영주의 直營地經營도 없었다. 일부의 지주에 있어서는 가내노비노동에 의하여 자기토지의 일부를 自耕하는 사례가 흔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경영이 되는 일은 없었고 전체적 농업생산에 있어서는 거의 무시하여도 좋을 정도였다. 다시 말하면 한국중세사회에 있어서 절대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농업은 소농민경영에 의하여 담당되고 있었다.

한국중세사회의 농민은 토지소유관계에서 볼 때, 기본적으로 두가지 範疇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자기가 경작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自作農民이며, 다른 하나는 지주의 토지를 경작하는 佃戶이다. 한국중세사회의 각 시대에 양자가 어떠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자료는 없다. 발생사적으로 보아 전자가 후자보다도 선행하는 것으로 볼 때, 후자가 중세사회의 후기로 갈수록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을까 추론해 볼 수는 있겠으나, 구체적인 자료는 양자의 비중이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간접적인 자료이기는 하나 麗初와 鮮初에는 상대적으로 자작농의 비중이 컸던 것 같고 麗末과 조선조 말기에는 후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조선조의 초기와 후기를 보면 아래와 같다.

1) 「我國壤地偏小，無田之民，幾乎十分之三。有田者有故，而不能耕種，則鄰里族親並耕而分，乃民間常事也。」(世祖實錄四年一月丙子條)

2) 「諫院正言柳復明啓曰,……凡民之置一結者, 果幾人哉。十家之聚, 有田者無一二, 半是雇人之田。終歲勤勞, 不足供常稅, 而輸其半於田主……」(景宗實錄元年九月甲午條)

1)은 조선조초기의 자료이고, 2)는 조선조후기의 자료이다. 초기에는 토지가 없는 농민이 10분의 3이고, 후기에는 토지를 가진 농민이 10분의 1 혹은 2 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비율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초기에는 자작농이 많았고 후기에는 전호가 많았다는 것은 대체로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중세사회에 있어서 직접생산자인 농민의 경제형편은 어떠한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한국중세사회의 標準的 농가를 들어 살펴보자. 조선조초기에 표준적 농가의 경제형편이 어떠한가하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는 듯하다. 후기의 한 事例를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

「請試思之, 民其堪乎。一結之田, 其得穀, 多者八百斗也, 小者六百斗也, 下者四百斗而已。農夫無田, 皆耕人田, 終歲勤苦, 八口食糧, 四鄰酬傭, 及秋之成, 田主割其半矣。六百斗者, 其所自領, 三百斗而已。除其種子, 除其假貸, 除歲前之糧, 其所贏餘, 不滿百斗, 而稅賦之剝割攘奪, 至於此極, 哀此下民, 何以活矣。」(牧民心書卷五稅法下)

표준적 농가규모는 1結이다. 일결의 소출은 평균 600斗이며, 대개의 농민이 전호이므로 소득은 300두에 불과하다. 이 소득중에서 농민은 종자를 남겨두어야 하고 長利의 元利를 상환하여야 하며 歲前의 양식을 제외하고나면 100두밖에 남지않는데 거기서 또 賦稅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부담을 지고서는 농민이 제대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茶山의 결론이다. 이러한 다산의 분석은 『限民名田議』에서의 燕岩의 분석과도 일치하고 있으므로 당시의 사정을 객관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위의 분석이 표준농가에 대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 표준농가는 당시의 일반적 농가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일반적 농가의 토지보유 면적은 표준농가 보다도 훨씬 적은 것이다. 金容燮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量案上의 농지경작규모에 있어서 50負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민이 지역에 따라서 66.1%~83.5%로 나타났다(朝鮮後期農業史研究(I) 165面). 일반적 농가의 경제형편은 표준적 농가의 그것보다도 훨씬 비참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위에서 말한 것은 조선조후기 농가의 경제형편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조선조초기에도 적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한국중세사회는 서양중세사회와는 달라서 농민의 토지보유에 있어서 평균적 경향은 없었다. 어느 시기에 있어서나 농민들간의 토지보유에 있어서는 심한 격차가 있었고, 또 그들간의 계층분화도 비교적 활발한 편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조초기의 國役編制를 위한 戶의 계층분류에서도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世宗實錄 18年 7月 壬寅條에 정식화된 江原道의 예를 들어보자.

戶別耕地分布(江原道)

| | | 耕地規模 | 戶數 | % |
|---|----|-------|----------|-------|
| 大 | 戶 | 50結以上 | 10戶 | 0.1 |
| 中 | 戶 | 20 " | 71 " | 0.6 |
| 小 | 戶 | 10 " | 1,641 " | 14.2 |
| 殘 | 戶 | 6 " | 2,043 " | 17.7 |
| 殘 | 殘戶 | 5結以下 | 7,773 " | 67.4 |
| 計 | | | 11,538 " | 100.0 |

위의 표를 보면 강원도의 농민은 매우 심하게 분화되어 있다. 물론 위의 「戶」는 自然戶가 아니고 法制戶로 추측되지만 법제호의 계층분화도 자연호의 그것을 대체로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강원도의 총호수 중에서 대호는 0.1%, 중호는 0.6%, 소호는 14.2%, 잔호는 17.7%밖에 안되는데 대해서 잔잔호는 무려 67.4%나 된다. 그리고 토지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거나 토지가 적기 때문에 국역편제에 들어갈 수 없었던 「不成戶」를 감안한다면 강원도의 농민계층분화는 위에서 제시된 통계표보다 훨씬 복잡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면 위와 같은 농민의 격심한 계층분화의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우선 그 원인으로서 지적될 수 있는 것 중의 중요한 것을 들어보면 賦稅, 長利 및 土地賣買의 自由 등이다. 부세는 자작농인 良人에게 특히 가혹하였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관리나 양반지주들은 여러가지 특권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혹은 특권을 행사하여 부세부담을 면제 또는 경감받을 수 있었지만 일반 농민들은 자기몫은 물론 지주들의 몫까지 부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리고 고리대인 장리 또한 농민들의 경제적 몰락을 가져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러나 위의 사실들이 비록 농민들에게 가혹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농민의 계층분화를 촉진하는 데에는 농민에 의한 토지소유와 그 매매의 자유를 전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농민들에게 있지 않고 그 매매가 자유롭지 못하다면 비록 농민의 궁핍이 가중된다고 하더라도 그 분화의 가능성은 극도로 제한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중세사회에 있어서의 토지매매에 관한 한 아직도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이다. 중세에 있어서 토지매매가 자유스러웠다고 결론을 짓기에는 그 연구가 아직 충분치 않다. 각 시대에 있어서 토지의 매매 상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조선조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軍資僉正李晏上疏曰，世宗祖田地家舍買賣，定限五載，使貧窮之民，見急告賣，緩期還退。今者貧困之徒，或迫於公賦私債徵收之急，田地家舍，乞賣於富家。爲富家者，知其窮急，減價以買之，過十五日，則勿退。以有限田地，而盡入於閭右，富者日益兼并，貧者無立錫之地，因而逃散，民戶漸耗，軍額日減，此非細故也。臣願，凡田地家舍買賣，復限五年，以厚殘民之生。」(成宗實錄十二年六月壬子條)

조선조에 들어와서 世宗 6년에 이미 법령에 의한 토지매매의 금지가 해제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금지령은 이미 그 이전에 토지의 매매가 성행하여 봉건통치에 지장을 주어왔다는 사실을 당연히 전제로 하고 있다. 世宗 6년에 금지령을 해제한 것은 객관적인 사회경제사정에 맞지 않는 부자연스럽고 일시적인 금지령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겠다. 위의 李晏상소의 뜻은 세종왕대에는 빈민의 사정을 고려하여 방매한 토지라도 5년 이내에는 그를還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인데, 지금은 1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겸병이 심하니 이후로는 다시 옛날법으로 환원하여 달라는 것이다. 우리는 위의 기록을 통하여 이미 기본적인 생산수단인 토지의 매매가 비록 환퇴라는 제한이 있고 「減價以買之」라는 불등가교환의 특징이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자유스러웠고, 또 토지를 방매하는 사람은 빈민이고 토지를 겸병하는 사람은 부호이며 토지매매의 원인은 「公賦・私債」였다는 것등을 알 수가 있겠다.

조선조에 있어서의 토지매매의 성행은 고려때의 계속이라고 생각된다. 고려 중기의 사료 하나를 들어본다.

「欲買土一廬，爲耕農氓，亦足以老死，而無戚戚者。嘗遊端川，山川信美，可以卜居，環江石壁奇絕，其東有一遺墟，訪之，乃郡氓之田也。以官租私契之委積，屢欲貨財以緩禍而不售，僕聞而樂之，無資可買，且無經營之費。今學士李公知命於僕爲知己，欲借其力，而具材於山谷，因有啓獻之，已見從矣。當不出首夏，結構草堂，携家便去，且買江田數頃，以供伏臘，此吾計也。」(西河集卷四寄山人悟生書)

위의 사료는 12세기 후기 즉 고려 중엽에 살았던 林椿의 기록이다. 그 내용은 경제적으로 몰락한 兩班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 부세 및 고리대(?)에 조들려 토지를 팔려고하나 팔지 못하고 있던 시골 농부의 토지를 매입하여 은거할 장소를 마련한다는 이야기이다. 위의 기록은 앞에서 제시한 조선조 초기의 기록보다 민간들간의 토지매매사정을 더욱 생생하게 나타내 주고 있다. 우선 토지의 매매주체는 지주대 농민이 아니라 「農氓」이 되고자 하는 몰락양반대 농민이다. 그들간의 매매관계는 어떠한 강제도 수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농민이

자발적으로 토지를 판매코저 한 것이다. 그리고 매매가 성립된 곳을 변화한 도시가 아니라 한산한 농촌이었다. 농민의 토지판매의 동기는 역시 부세와 고리대이다. 위의 내용으로 보아서 우리는 이미 12세기부터 지주와 농민간, 그리고 농민과 농민간에 토지의 매매가 일반적으로 성립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면 통일신라시대에 있어서 토지의 매매사정은 어떠하였는가. 이 시기에 있어서도 토지매매에 관한 약간의 연구업적이 있다. 이미 이 시기에 있어서 사적 토지소유권을 증명하는 「地券」이 작성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인상적이다. 사적 토지소유권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토지소유를 증명하는 「地券」이 성립될 수 없음은 물론이겠다.

하여간 우리는 한국중세사회에 있어서 토지의 사적 소유를 전제로 하는 토지매매가 꾸준히 지속되어왔다는 사실은 기존의 연구업적에 의하여 대단히 명확하게 밝혀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그 매매의 범위가 어느 정도이며 또 그것이 얼마나 활발하게 진행되었는가는 단정할 수 없다. 중세가 상품생산사회가 아니고 자급자족을 기초로 하는 자연경제로 특징되고 있는 만큼, 우리는 생산수단인 토지의 자유로운 매매가 성행하였다고 과장할 수는 결코 없는 것이다. 이미 토지의 매매가 농민들사이 또는 농민과 지주사이에서 일반적인 관행이 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봉건국가에 의하여 쉽사리 금지 또는 통제될 수 있는 것이며, 또 구체적인 역사과정은 그렇게 진행되어 왔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세사회에서는 상품생산과 상품유통의 자유가 경제를 규율하는 지배적인 원리가 아니라 대토지소유와 분산적 경영을 토대로, 강권적 권력체계에 의한 피지배계급에 대한 신분적 구속을 통하여 지대를 수취하는 것이 기본원리로 되고 있는 한, 사적 소유를 기초로 하는 토지매매의 자유는 중세사회에 있어서 중속적 원리로서 밖에 작용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중세사회에 있어서는 서양중세사회에 있어서와는 달리 기본적 생산수단인 토지에 대한 매매가 자유스러웠기 때문에 그것이 한국중세사회에 서양중세사회와 다른 특징을 부여하였다. 토지의 자유매매는 농민간의 경제적 및 신분적 계층분화를 복잡하게 하고 그 유동성을 증대시켰으며, 또 농민들에게 토지로 부터의 이탈을 자유스럽게 함으로써 농민의 토지에의 긴박도를 약화시켰다. 위의 두가지 현상에 대하여 봉건지배계층이 어떠한 법률적 제한도 가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다. 양반·양인·노비에 대한 법률적 규정은 국역편제나 과거제도 및 그 절차에 의하여 강화되고 있었으며, 농민의 토지로 부터의 이탈도 鬻牌法 등을 설정하여 막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중세주민들간에 경제적 계층분화가 뚜렷하고 그 유동성이 증대하는 한, 한 紙片의 법률적 구속력의 실현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하겠다.

II. 農民의 身分과 地主·佃戶關係

한국중세사회의 기본적 신분구성은 兩班·良人·奴婢로 되어있다고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의 간단한 도식보다도 훨씬 그 구성이 복잡했던 것 같으며, 그 때문에 그러한 도식화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반론이 있을 수 있겠다. 반론이 새로운 도식을 입증하는데 성공하는 경우를 생각하더라도, 당시의 현실적 실정을 감안할 때 그 내용을 크게 수정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도식을 일단 받아들이는 전제위에서 논의를 전개해 볼까 한다.

위의 도식은 법제적 측면에서 본 신분구성이다. 법제적 측면에서 양반은 한국중세사회에 있어서 가장 상위의 신분이며, 지배자인 관료의 班列에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는 계층이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가지 의무적인 賦稅 및 國役을 면제받고 있었던 특권계급이었고 관료로서 국가에 봉사하는 경우 과전 및 공신전 등 양반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물질적 토대를 국가로부터 부여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법제적 측면에서만 본다면 양반은 하나의 지배계급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良人은 公奴婢와 더불어 국역의 부담계층이었다. 흔히들 良人은 법제적인 측면에서 양반과 그렇게 다르지않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이 주장은 주로 관료가 될 수 있는 양인의 법제적 신분을 그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복잡한 양인신분의 내적 구성을 분석한 이후에야 성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양인이라고 하여 그것을 구성하는 각 계층이 동일한 신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양인신분의 일부만이 관료로의 상승 즉 양반으로의 상승이 가능한 것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대부분의 양인은 그 경제적 기반의 불안정성과 무거운 국역부담 때문에 법제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양반으로 상승할 수가 없었고 國家에 대하여 일정한 賦役義務를 지는 피지배계급이라고 볼 수 있다.

노비는 그것이 公奴婢이든 私奴婢이든 그 주인에 의하여 강력한 인격적 예속을 받는 신분의 소유자였다. 노비는 주인의 재산이었으며 그 매매가 법제적으로 허용되고 있었다. 그들은 현실적으로 가정을 가지고 독립적인 경영주체가 되고 있었으나, 그것은 노비의 법제적 신분이 그것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었던 것인 만큼 주인의 요구에 의하여 그 권리가 박탈될 수 있는 것이었다. 노비는 그 신분적 지위에서 보면 서양중세의 농노와 같은 존재였다.

양반·양인·노비에 대한 법제적 규정은 비교적 엄격하고 또 당시의 사회관습에 있어서

도 그 구분은 대단히 중요시되었던 것 같다. 지배계급으로서의 양반이 자기의 사회적 특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 그들간의 신분적 차이를 법제적 규정 이상으로 강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전통사회에 있어서는 어디서나 할 것 없이 신분적 사회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간의 경제적 처지는 신분적 처지만큼 뚜렷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었다. 적어도 조선조사회에 있어서는 일부의 관료 및 胥吏를 제외하고 나면 국가가 그들의 신분에 알맞는 경제적 기반을 부여한 적은 없었다. 그 때문에 동일한 신분계층에 속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들의 경제적 처지는 매우 다양하였다. 양반이라고 하면 우리는 일단 지주계급으로 생각할 수가 있으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었다. 이조전기에 있어서 조차도 양반중에는 자작농은 물론 佃戶도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양인은 국역의 부담자이므로 자작농이었을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양인의 상층은 지주인 경우가 많았고 佃戶로 된 경우도 아주 많았던 것이다. 양인중 자작농과 전호의 비율이 어느 정도였던가를 나타내주는 직접적인 통계는 없으나 조선조전후기에 걸쳐서 전체 농민중 자작농이 차지하는 비율로 보아 양인으로서 자작농인 경우가 전호가 된 경우보다 우세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노비의 경우도 경제적 처지의 다양성은 위의 경우들과 마찬가지로 다. 노비에는 공노비와 사노비가 있다. 공노비는 대부분이 농민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자작농 아니면 전호였다. 사노비는 또 率居奴婢와 外居奴婢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솔거노비는 독립의 경영단위를 형성할 수 없었고 외거노비는 대부분이 전호였다. 외거노비 중에는 부분적으로 자작농인 경우도 있었고 또 노비를 소유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어디까지나 중세사회내부에 있어서의 예외적인 것이었던 것 같다.

조선조전기에 한정해서 본다면 농민대중을 형성하는 사회신분계층은 양인과 노비였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양반신분을 가진 자도 자작농은 물론 전호인 경우도 있었으나 이들 경우에 있어서는 오래도록 자기의 신분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양반과 양인의 법제적 신분의 차이는 뚜렷하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제적 신분의 차이일 뿐이며 몰락양반과 양인간의 사회경제적 처지는 비슷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몰락양반은 그 경제적 처지가 자기의 신분을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양인으로 몰락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제 농민대중을 토지소유 및 신분적 지위와의 관련에서 나누어 보면 양인자작농·양인전호·노비전호로 될 것이다. 양인자작농은 소토지소유자이다. 양인전호 및 노비전호는 그 신분적 지위가 어떠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못하였던 농민이며 한국중세사를 통하여 후

자가 전자보다 우세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중세사회의 기본적 특징은 지주의 대토지소유와 농민의 분산적 경영이었던 만큼 전호가 지주와 맺는 사회적 관계가 한국중세사의 성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제 전호가 한 조각의 토지를 매개로 지주와 맺는 사회적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중세사에 있어서 전호와 지주와의 관계는 두가지 類型으로 나뉘어지고 있다. 농민의 사회경제적 존재형태를 기준으로 할 때 奴婢制와 佃戶制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지주의 토지소유를 기준으로 할 때 農莊制와 並作制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양자가 모두 서양중세의 莊園制와는 달라서 不輸不入權이나 領地를 토대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었으며 봉건국가와의 사이에 封主와 封臣간의 位階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직접생산자인 농민의 사회경제적인 처지에서 볼 때 외거노비나 양인전호는 노비 소유자나 지주의 강력한 인신적 예속하에 있었으며, 그들이 지주의 토지를 빌려 독립경영 단위를 토대로 토지를 분산적으로 경영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서양중세의 농노와 사회경제적 처지가 기본적으로 동일하였던 것이다.

노비제나 전호제하에서 농민의 사회경제적 처지가 서양중세의 농노의 그것과 같다는 점에서 양인전호와 노비전호의 사회경제적 처지는 동일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모두 지주에 의한 직접적인 것이나 봉건국가에 의한 간접적인 것이나를 물을 것 없이 경제외적 강제하에 놓여있었다. 가치법칙이 지배적인 경제법칙으로 관철되지 않는 곳에서는 경제외적 강제라는 매개항이 없이는 지주가 농민으로부터 지대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서양 중세사회에 있어서 농노의 사회경제적 처지가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다를 듯이 노비제와 전호제하에서의 농민의 그것은 차이가 있었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노비는 지주의 재산이었으며, 그때문에 지주에 의한 인격적 예속은 그만큼 강했다. 지주는 자기의 노비에 대하여 外居시킬 수도 있었으며 內居시킬 수도 있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노비의 독립적 경영은 지주의 자의에 의하여 파괴될 수 있었던 것이며 노비의 독립경영 자적 지위는 그만큼 불안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다만 지주가 노비에 의한 대경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고 또 지주가 노비를 內居시키는데 있어서는 내거시키는데 수반하는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 노비의 독립경영이 쉽사리 파괴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을 뿐이다.

양인전호는 앞에서 누차 언급한 바와 같이 지주에 대해서는 인격적으로는 자유스러운 존재였다. 비록 그가 지주의 전호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주가 전호를 자기의 재산처럼 다룰 수는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전호는 지주에 대해서 경제적 부담을 질 뿐이라고 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주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예측되어 있는 양인은 결코 지주에 대한 인격적 예측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것은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인이 법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신분적 지위를 유지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아래에 구체적인 사료를 제시하겠지만 지주에게 경제적으로 예측된 양인은 지주에 의하여 奴僕처럼 사역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處干 혹은 雇工이라고 불리워졌다. 즉 그들은 신분적으로는 양인이었지만 사회경제적 처지는 양인과 노비의 중간적인 존재이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노비전호는 서양적 농노제하의 농노였으며, 양인농민은 농노제가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봉건적 예측 농민이었다. 한국중세사에 있어서는 조선조전기(조)에 한정해서 보면 노비제와 전호제가 동시에 병존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전호제와 노비제가 한국중세사회의 전기간에 걸쳐 어떤 비율로 존재하였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전호제는 조선조 중기에 와서 양인에 대한 국역편제가 변질되면서 전면적으로 공인되었다고 한다. 노비제의 전호제로의 이행은 역사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지주가 농장제이전 병작제이전 그것을 경영할 수 있는 물질적 기반은 어디에 있었던 것인가. 그것들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지주가 대토지소유자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한국중세의 토지소유의 성격에 관한 복잡한 논쟁을 염두에 둔다면 그렇게 간단히 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정이다. 조금 간략하게 이야기 한다면 土地國有論者들은 지주에게 토지의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고 지주는 단순한 收租權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과연 과전법체제하에서 공신전이나 과전을 받는 사람들은 토지소유권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수조권을 지급받은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들은 수조권 뿐만이 아니라 많은 노비도 賜給받았다. 우리는 일단 이 경우에 지주가 수조지를 노비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상정해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수소지에는 이미 기존의 경작자가 있었던 것이며, 과전법체제는 동시에 수소지에 있어서의 경작권침탈은 불법적인 것으로 금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수조권자들은 그가 소유하는 노비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인가. 이 경우에 우리는 당연히 지주의 수조지 이외의 사적 소유토지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없으며 현실적인 사정은 또한 그러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수조권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公田에 있어서 지주·전호관계는 널리 설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지주의 대토지소유를 논의할 때, 문제를 수소지에 한정시켜 말하는 것은 대단히 현실과 동떨어진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과전법체제에만 국한하여 말한다면 양반의 수조지가 전국 토지의 5분의 1을 초과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봉건적 토지소유의 성격을 이야기할 때에는 문제를 수

조지에 좁혀 논의할 것이 아니라 수조지가 아닌 일반 民田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선 노비제에 의한 지주의 사적 대토지소유의 예를 들어보자.

「司憲府上疏，請知議政府事金承禕之罪，原之。初承禕曰，臣家奴居江原道平康縣，自言所耕田只五結。敬差官改量，增爲二十五結。臣答曰，汝田雖五結，其中無乃有加耕者乎。或原田非止五結，汝乃謂之五結乎。奴對曰，安敢誣哉。上曰大司憲成石因曰，誠如是，則敬差官罪，不容赦。予雖不言，執法之官，豈肯釋之。遂遣行臺監察俞勉，行視虛實。勉還言，承禕所啓非實。於是，司憲上疏，累請承禕誣罔之罪，遣史守直。上以功臣，特宥之。」(太宗實錄七年五月己巳條)

知議政府事이며 功臣이었던 金承禕의 家奴는 강원도 평강현에 거주하고 소경전 5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 토지는 敬差官이 改量해보니 실제로는 25결이었는데 가노는 5결이라고 하였고 金承禕도 가노의 말을 지지하면서 敬差官을 비난하였다. 그래서 국왕이 行臺監察을 파견하여 眞僞를 조사하였는데 金承禕의 무고가 판명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토지의 성격이다. 金承禕는 知議政府事이며 공신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공신전과 과전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과전과 공신전이 강원도에 설정된 일은 없었으므로 이 토지는 과전이나 공신전으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金承禕의 가노가 경영하고 있었다는 점으로 보아 軍田이나 人吏田 등의 私田도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 다음 문제로 되는 것은 이 토지가 金承禕의 소유토지인가 그의 가노의 소유토지인가 하는 점이다. 金承禕는 그의 가노에게 말하기를 「汝田」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25결이란 토지는 일개 사노가 소유할 수 있는 토지로서는 너무 많은 것이며, 또 그의 가노의 토지라면 金承禕가 「誣罔之罪」를 범해가면서까지 자기가노를 두둔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이 토지는 金承禕의 토지이며, 가노에게 그것을 경작시키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조세 및 요역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25결의 자기 토지를 5결이라고 거짓 보고한 것이다.

이와 같이 생각한다면 이 토지는 金承禕의 사유토지인데 그의 가노에게 경작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25결이라는 토지는 한 노비가 경작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토지이다. 그 토지는 그의 많은 가노를 두어 경작시켰는지, 혹은 가노가 토지를 관리하고 그 지방의 양인농민으로 하여금 병작시켰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金承禕가 평강현에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노비를 두어 경영한다고 하는 사실은 문제로 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공인되고 있다는 사실로 보아 그 토지는 노비에 의한 경영일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시기에는 아직도 병작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위의 자료는 노비와 노주의 地代관계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이야기해 주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자료가 매우 희귀한 것 같으므로 조선조증기의 자료를 들어 이 관계를 살펴 보기로 한다.

「汝其馱租於牛，入茂朱某處深峽中，斫木築室，春租爲農糧，墾耕火畬，蒔豐草，以種黍粟。每秋只以收穫都數告我，粟則作米儲置，課歲如是也。」(東野彙輯卷一覆畫綱揮椎除惡條)

위의 자료는 郭再祐夫人이 술거노비 각 5구에 「種三十包」와 「牛三隻」을 주어 茂朱山峽에 의거시킬 때에 내린 명령이다. 즉 소에 곡식을 심고 茂朱山峽에 들어가 화전을 개간하여 「黍」와 「粟」을 심되 매년 그 수확량을 보고토록 하고 「粟」은 찧어서 저축해두라는 것이다.

위의 자료는 노비를 의거시켜 황무지를 개간한다는 점에서 노비를 熟田에 의거시키는 경우와 다른 점이 있을 것이므로 노주와 의거노비간의 지대관계를 전형적으로 나타낸다고는 볼 수 없겠으나 그 기본적 관계는 나타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노비를 의거시킬 때에 농량 및 소등을 노주가 지급하고 있다. 술거노비는 노주의 소유물로서 웬만한 재산은 소유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의거시킬 때 농량과 농기구를 노주가 마련하여 주지 않으면 안되었을 것이다. 또 노비는 총수확량을 매년 가을에 노주에게 보고하여야 하였다. 그리고 노비는 화전에 「黍」와 「粟」을 경작하여 粟 즉 조는 매년 주인을 위하여 저축하지 않으면 안되었는데 그가 차지하는 몫은 불분명하다. 「黍」 즉 기장은 저축의 의무가 없었으므로 자기몫이 되는 것은 분명하겠으나 소출의 조를 모두 저축하는지 그 중의 일부는 농량으로하고 나머지를 저축하는지는 알 수 없다.

우리는 위의 자료에서 노비의 지대관계를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볼 수가 있다. 우선 이 노비는 경제적 독립성이 매우 취약하다. 그는 매년 수확물을 주인에게 보고하여 그 처분에 있어서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는 주인의 몫인 잉여생산물인 조를 저축하지 않으면 안되었는데 그것은 최저 생계비를 뺀 전생산물일 것이다. 잉여생산물이 전생산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0%가 훨씬 넘었을 것이다. 그것은 일반 지주·전호관계에 있어서 지대율이 50%였다는 사실과 노비가 주인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身貢과 주인으로부터 미리 지급받은 농량 및 생산도구를 감안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밖에 추측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노비가 개간한 토지는 지주의 소유가 되었을 것이다. 지주가 토지를 소유함으로써만이 노비에게 지대를 강요할 수 있었던 것이다.

노비를 사역하는 사적 대토지소유와 더불어 주목되는 것은 並作制이다. 조선조증기에 있어서 병작반수제는 富豪·品官·鄉吏 등에 의해서 광범하게 행해지고 있었다. 이제 太宗때의 左政丞 河崙의 증언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又品官鄉吏，廣占土田，招納流亡，並作半收，其弊甚於私田。私田一結，豐年只收二石，並

作一結，多取十餘石。流移者，托此避役，影占者，托此容隱。賦役不均，專在於此。……田地並作，除鰥寡孤獨無子息無奴婢三四結以下者外，一行禁斷。」(太宗實錄六年十一月己卯條)

위의 자료는 국가로부터 수조지로서 지급받지 않은 광범한 토지를 지방사회의 지배자인 品官·鄉吏들이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실정을 잘 알려주고 있다. 그들은 그 토지를 직영하는 것이 아니라 流亡民들을 끌어들이어 並作半收하고 있는 것이다. 수조지에서는 풍년에도 1結에 租를 2石밖에 받지 않는데 사적 지주의 경우에는 많으면 10餘石까지 받는다. 그리고 그들은 유망민을 은의 함으로써 양인 혹은 공노비의 身役을 회피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병작은 환과 고독과 자식이 없는 자 및 노비가 없는 자의 3·4結 이하의 병작을 제외하고는 일체 금하자는 것이다.

위의 병작제의 경우 전호가 어떠한 신분적 지위에 있었는가는 알 수 없다. 노비 양인 등 어느 경우나 다 생각할 수 있지만 비록 그들이 노비라고 하더라도 지주에게 직접 예속된 노비는 아니었던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노비에 의한 병작은 공인되어 있었는데, 위의 경우는 병작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아 그들의 대부분이 양인일 것은 거의 틀림없겠다. 만일 그들이 양인이라면 법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주에 의하여 인신적 구속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 점에서 그들은 외거노비의 사회적 처지와는 매우 다르다 하겠다. 그러나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그들은 賦稅·身役 등 국가적 수탈에 의하여 몰락한 양인들이며 지주의 비호하에 신역을 포탈하고 있는 자들이므로 지주에게 인신적으로 어느 정도 예속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당시의 많은 기록들이 佃戶가 婢僕처럼 지주에 의하여 사역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비록 그들이 농노제하의 농노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주로 부터 사실상의 인신적 예속하에 있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다.

그리고 지주는 전호로부터 토지생산물의 2분의 1을 지대로서 수취하였다. 2분의 1 지대는 당시의 농업생산력으로 보아 전호의 잉여생산물의 거의 전부일 것이다. 비록 그 토지에 파전이 설정된다고 하더라도 지주는 10분의 4의 순수입을 수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분명히 사적 대토지소유자였으며,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과 전호에 대한 인신적 구속을 근거로 2분의 1이라는 고율지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위의 자료에서도 지주가 고율의 지대를 받는 것 자체는 불법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환과 고독, 자식이 없는 자 및 노비가 없는 자에게는 3·4결 이하의 병작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봉건국가가 대토지소유를 기초로 하는 병작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 이유는 여러가지이겠지만 국가와의 경제적 이해에서 볼 때 병작제를 허용하고서는 양인에 대한 초기의 國役編制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양인의 신역은 양인의 토지소유를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양인이 자작농일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양인의 토지소유를 전제로 하는 토지매매가 진행되는 조건하에서는 양인의 경제적 계층분화는 불가피한 것이었고 병작제의 발전 역시 불가피한 것이었다. 국가는 한갓 법률로서 그것을 금지하려고 하여도 현실적으로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 때문에 조선조 중엽이후 국역편제의 성격변화와 더불어 병작제는 전면적으로 공인되고 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인자작농의 봉건국가에 대한 부담을 살펴보기로 한다. 양인농민이 국가에 대한 부담으로서는 租·貢物·徭役·良役이 있었다. 租는 1결에 답일 경우 糙米 30斗(=2石), 전일 경우 雜穀 30斗였다. 貢物은 民戶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토산물인데 부과에는 일정한 기준이 없고 各州·縣의 田地의 면적, 지방물산과 중앙관아의 수요를 참작하여 주·현이 부과량을 결정하였다. 징수대상은 각종의 농산물, 수공업제품 및 광산물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狩獵物등 山海珍味는 없는 것이 없었다. 貢物은 농민들에게 대단히 큰 부담이었다. 徭役은 토지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되었는데 원칙적으로는 8結에 1人을 거출하며, 연간 6일간 국가의 잡역에 봉사한다. 양역은 여러가지의 身役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軍役이었다. 군역은 양인의 국가에 대한 부담중 가장 무거운 부담이었기 때문에 上番하는 군인 즉 戶首에 대해서는 수명의 保人 혹은 奉足을 지급하였다. 군역의 부담이 어느 정도였던가는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成宗代에 代立價를 公定할 때 公定價는 五升布 7疋이었는데 실제로는 代立人과 관속배들이 결탁하여 常布 100疋을 받기도 하였다. 租는 免稅地·收租地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하여 징수되었고 貢賦도 원칙상 모든 호에 대하여 징수하였으므로 특별히 양인에게만 경제적 부담이 되었던 것은 아니다. 양역으로서의 군역은 유독 양인에게만 부과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한국중세사회의 신분을 양반·양인·노비로 나누는 의의였던 것이다. 양반은 지배계급이며 양인과 공노비는 봉건국가의 국역담당자로, 사노비는 양반에 대한 私役의 담당자로 각각 배정하였던 것이다. 조선왕조에 있어서 流民문제의 중요한 한가지 원인이 바로 이 군역이었고, 그만큼 양인은 국가의 수탈에 예속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군역이 있음으로 해서 역설적으로 지주의 대토지소유를 기초로하는 奴婢制와 佃戶制가 가능하기도 했던 것이다.

III. 土地所有關係에 있어서 封建國家의 位置

중세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은 토지였다. 토지소유의 의의는 토지의 소유자가 전호로부터 받는 지대에 있었다. 지대는 대토지소유자와 토지가 없는 직접적 생산자인

농민의 사회적 관계를 전제로 해서만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므로 지대의 성격은 바로 그러한 사회적 관계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대의 성격을 분석함으로써 봉건적 토지소유의 성격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조선조 전기의 토지 種目은 여러가지 관점에서 분류하여 볼 수가 있다. 수조권을 기준으로 분류해 볼 수도 있고 법적 소유권을 기준으로 분류해 볼 수도 있다. 어느 기준이거나간에 봉건적 토지소유의 성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구실을 함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문제는 어느 기준이 생산과정에 있어서의 인간관계를 가장 핵심적으로 나타내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한 기준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대의 귀속문제로 밖에 될 수 없다.

조선조 전기에 있어서 농업경영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세가지 형태로 이루어졌다. 노비제·전호제·자작농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농업경영이 조선조전기의 각 토지종목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는 아직 자세히 밝혀진 바 없다. 노비제와 병작제는 국가직속지나 왕실직속지나 사적 대토지소유에서나 일반적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임에 틀림없을 것 같다. 이 경우 토지의 법률적 소유관계는 중요한 지대수취자가 국가일 때 국유지, 왕실일 때 왕실소유지(물론 중세사회에서는 국가와 왕실의 私家가 확연히 구분될 수 없는 것이지만), 민간일 때 사유지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작농제인 경우에는 농민의 소유지였을 것이다.

그리고 위와같은 토지의 성격을 전제로 법적 뒷받침도 되어 있었던 것이다. 즉 토지소유자들은 그들의 토지를 합법적으로 매매·상속·증여·저당 등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의 「토지소유」라는 용어는 제한된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중세사회에 있어서는 근대법적인 소유 또는 私有는 있을 수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서양중세의 연구자들이 토지소유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로서 「領有」 또는 「保有」라는 낱말을 쓰는 데에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사정은 한국중세사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며 私的 所有가 公權力의 침해를 배제할 수 없을 때 언제나 소유관계는 근대적 소유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불완전한 것일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중세사회에 있어서 토지소유관계에 가장 복잡한 내용을 주는 것은 토지소유관계에 있어서의 국가의 위치이다. 국가는 전국의 토지에 대하여 賦稅의 권리를 가지며 또 토지의 귀속을 조정하는 힘이 국가에 유보되어 있었다. 국가가 각 토지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강제력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강력하게 행사될 수 있는가는 국가가 가진 법적 및 정치적 권력과 그 시대의 관행에 의하여 좌우되었지만,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는 私的 토지소유를 허용하면서도 조세권과 전국 토지의 귀속에 간섭할 수 있는 권리는 그대로 보지하고 있는 것이다. 즉 소위 公田의식은 관념상으로 뿐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위와 같이 본다면 한국중세사회에 있어서는 가장 큰 지주인 국가(왕실을 포함하여)를 포함하는 지주계급과 자작농이 각각 토지소유권자이었으며, 그들 위에서 국가가 부분적인 토지소유권을 가짐으로써 中央集權的 專制權力을 유지할 수 있는 물질적 바탕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봉건경제적 토지소유의 성격을 해명하는 일은 그 重點이 단순히 토지소유의 법률적 관계를 해명하는데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매개로 하는 대토지소유자와 직접적 생산자인 농민의 사회경제적 관계를 해명하는데 놓여있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봉건적 토지소유의 성격해명이 중세사회의 본질을 해명하는 일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중세사회의 토지소유의 성격이 국유냐 사유냐 하는 문제는 중세사회의 본질해명에 있어서 부차적인 의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